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나449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나449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5396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1.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피항소인 3. V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승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실 담당변호사 채희상

변론 종결 2021. 10. 26.

판결 선고 2021. 11.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539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V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의 각 '115,391,816원'을 '127,746,519원'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이하 'D'라고 한다)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매매예약과, D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 2018.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4,069,478원 및 그 중 102,394,794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10%,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V 주식회사(이하 '피고 V'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D 사이에 2018. 2. 28. 체결된 매매예약과 D와 피고 B 사이에 2018.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4,069,478원 및 그중 102,394,794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10%,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V은 피고 A,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B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A, B이 이 법원에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중 '위약금 713,510원'을 '위약금 713,15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0행부터 제17면 제5행까지 부분(그런데 위 금액이 ~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위 금액이 앞서 1의나.3)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2020. 6. 9.(제1심 변론종결일) 현재 D에 대한 구상채권액 127,746,519원[=104,069,478원 + 2,384,536원(대위변제금 잔액 102,394,794원에 대한 2018. 8. 14.부터 2018. 11. 6.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 + 8,668,490원(102,394,794원에 대한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 + 12,624,015원(102,394,794원에 대한 2019. 6. 1.부터 2020. 6. 9.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3))]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구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127,746,5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피고 A, B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746,5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추가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예약은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고 나머지 토지 잔대금 등을 확보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잠시 피고 A 명의의 가등기를 체결하여 두었던 것이고, 이후 실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와 사이에 체결되고 그 등기가 이전되었는바, 피고 A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만 피고 A에게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인 D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피고 A은 D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관계,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실제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A이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피고 A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항소와 피고 A,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의 각 '115,391,81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127,746,519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진원

판사이상률

판사권소영

별지